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부 및 기타 IOM 협력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지침과 실용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지원 제공자를 비롯하여 법 집행 기관, 대중매체와 압력단체, 입법자 및 정부 내 정책 자문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구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소개한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 사례들을 담고 있다.

본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 교육 도구이다. 또한 각 지침서는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으며,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성과 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지침서를 통해 정부, 비정부기구 및 후원자는 IOM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 VICTIM IDENTIFICATION & INTERVIEWING TECHNIQUES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

VICTIM IDENTIFICATION & INTERVIEWING TECHNIQUES



IOM 국제이주기구

국제이주기구(IOM)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가 이주민과 사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IOM은 이주민을 위한 선도적 국제기구로서, 국제 사회가 이주과정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주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이주를 통한 사회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주자의 존엄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행일 2011년 4월
발행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처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지은이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개발팀
옮긴이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 서관 1101호
전 화 02-2183-0191
팩 스 02-2183-0192
www.iom.or.kr

Publis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7, route des Morillons 1
1211 Geneva 19
Switzerland

1752 N Street NW, Suite 700
Washington, DC 20036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41 22 717 91 11
Fax: +41 22 798 61 50
E-mail: hq@iom.int
Internet: <http://www.iom.int>

+1 202 862 1826
+1 202 862 1879
mrfwashington@iom.int

ISSN 978-92-9068-219-6

ISBN 978-92-9068-605-7

©201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Design: Free Range Studio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이 출판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국제이주기구가 소유합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녹화, 사진촬영, 스캔 등을 통한 무단 복제, 자의적 유통 및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

VICTIM IDENTIFICATION &
INTERVIEWING TECHNIQUES

책을 펴내며

지난해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ssion in Republic of Korea)는 IOM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경험을 정리 및 체계화한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 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이하 '핸드북')의 한국어판을 발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본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는 핸드북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무자들이 유연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무안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피해자 식별과 인터뷰 기술', '직접지원', '귀환과 재통합', '아동', '역량강화', '정보 캠페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주제로 하여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대표부는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과 '직접지원' 그리고 '귀환과 재통합'을 먼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가 부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주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본 지침서가 현장에서 피해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정부 및 시민사회 관계자 분들에게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지침서가 나오기까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의 홍수연, 김혜경, 이숙현, 이지연, 유미리, 윤보은, 방정원님이 번역에서 출판 준비까지의 전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 지침서의 출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문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부 및 기타 IOM 협력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 지침과 실용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 제공자를 비롯하여 법 집행 기관, 대중매체와 압력단체, 입법자 및 정부 내 정책 자문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인식제고,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구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요소를 소개한다.

IOM의 사명은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주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과정으로, 이주뿐만 아니라 성별, 노동, 인권, 안보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IOM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타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인신매매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 사례들을 담아내고 있다. 본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 교육 도구이다. 또한 각 지침서는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으며,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성과 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 사례들을 담고 있다.

각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은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한 IOM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고, 그에 따라 IOM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본 지침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효과적으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가 있을 수 있다. 인신매매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인 만큼, 본 지침서는 광범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지는 않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미(美)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의 도움으로 제작되었다. 본 지침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개발팀

이 책의 활용법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각기 다른 대상들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각 지침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고 여러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소개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의 각 부분은 구체적인 필요와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중요한 용어는 용어 해설에 추가로 설명하였고, 출판물과 웹사이트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참여자를 위해 출처와 참고문헌으로 정리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인터뷰 기술에 관한 본 지침서는 교육 참여자에게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방법, 피해자 중심의 인터뷰 기술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긴급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식별, 인터뷰 가이드라인과 유사사항, 행동 계획 개발과 체계상의 문제 극복에 관한 것이다. 본 지침서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며 인권에 기반을 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책을 펴내며.....	ii
서문.....	iii
이 책의 활용법.....	iv

1장 : 기본 개념

• 당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가정해보자	1
• 인신매매란 무엇인가?.....	1
• 인신매매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2
- 수단	2
- 행위	2
- 착취	4
• 인신매매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통제하는가?.....	4
-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4
- 격리 : 신분증이나 출입국 서류의 압수.....	5
- 언어적 · 사회적 격리.....	5
- 폭력과 공포심의 사용.....	5
-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6
• 왜 인신매매 사업에 범죄자들이 몰리는가?.....	6
•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6
- 인신매매.....	7
- 이주자 밀입국 중개.....	8
•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	9
• 인신매매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10
• 인신매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10
• 난제에 대한 대응	10

2장 : 피해자 식별

• 피해자 식별이 왜 중요한가?	15
• 피해자 식별의 기본 원칙.....	15
• 누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가?	16
• 피해자 식별 과정	16
- 피해자 식별의 목적.....	16
- 결정내리기 : 이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인가?.....	19

3장 : 시작하기

• 인터뷰 기술의 원리.....	23
• 인터뷰 기술.....	24
- 1단계 : 인터뷰 장소 준비.....	24
- 2단계 : 인터뷰 소개하기.....	25
- 3단계 : 인터뷰 설명하기.....	26
- 4단계 : 인터뷰 시 지켜야 할 원칙.....	26
• 개인의 안전	29
• 아동 인터뷰를 위한 가이드라인.....	30
• 피해자 식별 과정의 한계	31

4장 : 실행하기

• 실행 계획 개발.....	33
- 실행 계획.....	33
• 대화	35
• 피해자 식별의 장애물	35

5장 : 돌아보기

• 지표(Indicators).....	37
- 지표란 무엇인가?.....	37
- 지표가 왜 중요한가?.....	37
- 어떻게 지표를 개발하는가?	38
• 피해자 식별 과정 평가하기	38
• 성공 여부 판단하기	40
• 누가 평가할 수 있는가?.....	41
• 언제 평가할 것인가?.....	41

결론.....	42
---------	----

첨부자료 1	45
--------------	----

용어 해설	49
-------------	----

참고문헌과 출처	59
----------------	----



NOTES: _____

1장 기본 개념

PART ONE BASIC CONCEPTS

당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가정해보자.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나 더 나은 삶에 대한 정보 등 다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신뢰하는 가족구성원이나 이웃, 지인이나 친구들이 그곳으로 가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그곳에 도착했는데 출입국 서류를 모두 압수당하고, 모든 행동이 통제되고 감시당한다고 생각해보자. 착취적인 조건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교통, 음식, 주거비용이 매일 빚으로 늘어나 절대 갚지 못할 수준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당한다면 어떠할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며,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나라에서 여권이나 신분증명서류와 돈이 없다면 어떠할까? 상품처럼 취급되어 사고 팔린다면 어떠할까?

자기 삶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착취를 통해 돈을 버는 인신매매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사고팔며, 실어 나르고 있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그 영향과 피해가 막대하다.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구축하는 첫 단계는 인신매매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란 무엇인가?

인신매매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강제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0년에 국제사회가 인신매매의 정의를 상정하였지만, 인신매매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잘못된 통념도 널리 퍼져 있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인신매매는 어떻게 발생하며 인신매매된 사람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잘못된 상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는 납치당한다.
일부는 강제로 끌려가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목적지에서 얻게 될 기회에 대한 거짓 약속에 속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한다.

잘못된 상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는 국경을 넘는다.

대개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으나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국내 인신매매라고 한다.

인신매매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신매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지만 조직범죄의 수준, 법체계 및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을 나타낸다.

수단 - 협박, 무력, 강압, 납치, 사기, 기만

행위 -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

착취 -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장기적출

수단

인신매매는 흔히 기회에 대한 거짓된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자신이 어떤 일에 고용될지는 알고 있으나 고용 조건은 알지 못한다. 특정 산업에서 일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예, 농장 근로자나 외국 무용수 등)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속기도 한다.

그밖의 경우, 피해자는 합법적인 일에 고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바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이때, 피해자들은 고용과 재정적 이득에 대한 약속에 현혹되어 대개 식당에서 일하거나 사무직, 가사에 종사하는 것과 같이 합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무력으로 피해자를 납치하는 인신매매자도 있다.

수단과 관계없이 위에서 제시된 모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착취적인 조건에서 거의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증이나 출입국 서류를 압수당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폭력으로 위협당하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지 못한다.

행위

인신매매에 대한 국내법과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송된다는 인신매매 범죄의 특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때, 국경을 넘는 것만이 인신매매 범죄의 구성 요건은 아니다. 인신매매는 동일한 국가 내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국경을 넘는 피해자에게 인신매매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과 연관되어 단계별로 일어난다. 피해자는 출신국 내에서 이송, 인수되어 국외로 매매되기 전까지 은닉처에 기거하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경유국을 거치는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 경유국에서 피해자가 머무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피해자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신체적·성적 학대 및 착취를 당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 경우 과정에서 매매 혹은 재(再)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운송 방식이나 지리적 맥락에 따라 경우 과정은 없을 수도 있다. 즉, 피해자는 단순히 동일한 국가 내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거나 아예 다른 국가로 바로 이송되기도 한다. (예, 항공을 통해 남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운송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다른 국가로 밀입국시킬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인신매매자가 건네주거나 훔치거나 또는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가 정식 비자 승인을 받은 공인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입국하기도 한다.

이동은 공공 혹은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육로, 해로, 또는 항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다른 국가로 밀입국하는 비정규 이주자가 포함된 집단에 속해서 이동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선박이나 차량의 비밀 공간에 은닉될 수도 있고, 단순히 트럭이나 자동차의 뒤 칸에 숨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보통 국경 검문소나 공항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 인신매매 범죄 조직의 일원과 동행하게 된다. 신분증은 각 국경 검문소에 제시해야 할 때를 제외하면 항상 인신매매자가 소지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흔히 저개발국에서 부유한 목적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발칸국가에서 유럽연합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중동국가로,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반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관광지나 경제성장 중인 도시와 같은 곳으로 경로가 형성되기도 한다. 발칸국가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의 국제 평화유지군이나 민간 계약자(civil contractor)가 주둔한 곳에 특정한 노선이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역사적·언어적 요인이 반영되어 경로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유럽으로 가는 브라질인 피해자는 종종 포르투갈을 거쳐 가는데, 이는 사용언어가 같아 인신매매 과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와 그들의 전 유럽 식민통치 국가들의 사례에서 처럼, 과거의 식민지 관계가 비자 조건에 영향을 미쳐 인신매매 경로가 달라진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미 기만된 상태로 고향을 떠나게 되지만, 때때로 차후에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밀입국자가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자에게 잡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해서 그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지 상황과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가장 인신매매에 취약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인신매매자에게 유인되어 착취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의 경로는 한 가지 요소를 일관되게 반영하여 형성된다. 피해자들이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들을 착취해서 얻는 이익이 가장 큰 곳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잘못된 상식

합법적 이주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는 불법으로 입국하기도 하지만, 법적 서류를 이용하거나 유효한 취업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피해자도 있다.

기억하세요

모든 인신매매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상식

인신매매의 목적은 성적 착취이다.

일부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기도 하지만 강제노동이나(예, 공장이나 농장 등) 가사노동 또는 무장전투 등과 같은 목적으로 매매되기도 한다.

착취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이다. 인신매매자는 오직 피해자를 착취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해자를 이송시킨다. 일부 인신매매자는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무급 노동이나 서비스와 같은 이득만을 취하기도 한다. 착취는 보통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에 시작된다.



인신매매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통제하는가?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강압기제를 사용한다. 인신매매자의 근본 목적은 피해자를 착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동시에 도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신매매자는 다양한 기제를 사용한다. 착취 유형에 따라 통제 방법은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대다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여행서류와 경비를 마련할 수 없다. 인신매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목적국에서 벌게 될 돈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미리 빌려준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자는 '채무로 인

한 인적 구속'을 사전에 계획하여 이후에 피해자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자의 실지출액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액이다. 인신매매자는 대개 보다 강력한 인적 구속을 위해 이동경비에 자신의 중개수수료까지 더해 부채를 높인다. 극도로 높은 부채는 인신매매자에게 이득을 창출해주는 동시에 피해자를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제3자에게 매매될 때 지불된 금액이 피해자 본인의 빚이 되면서 부채로 인한 인적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설사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납치되어 운송되었다 할지라도, 인신매매자가 납치자에게 지불한 구매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착취되기도 한다.

격리 : 신분증이나 출입국 서류의 압수

인신매매자는 대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의 신분증과 출입국 서류를 압수한다. 이는 피해자의 공식적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비정규 이주자 신분이 되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탈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경찰이 억압적인 권력집단으로 인식되는 국가 출신으로,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가는 즉시 송환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는 피해자가 기존에 경찰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을 더욱 공고히 한다. 불행히도 인신매매자의 이러한 주장이 종종 들어맞곤 하는데, 이는 목적국에서 경찰이 발견하는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중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보다는 즉각 국외로 출국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은 부패했고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나 다른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자는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 미소지와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다.

언어적·사회적 격리

피해자는 모국어로 소통하거나 자신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는 환경에서 감금당하기도 한다. 이는 인신매매자가 격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는 종종 인신매매 외부 환경과의 소통을 일체 차단당한다. (예, 서신교환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폭력과 공포심의 사용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폭력과 공포심을 사용한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복종시키기 위해 구타, 강간, 감금하고, 오랜 기간 고립시키면서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여하고 심지어 고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대는 처벌로 가해지기도 하고, 명령을 위반할 시에 일어날 결과를 피해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경고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신매매자

잘못된 상식

여성과 아동만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

많은 인신매매 연구에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동임이 밝혀졌지만, 이러한 연구 대부분은 성적 착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남성이 인신매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은 노동 착취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는 피해자에 대한 강압과 학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는 때때로 피해자 한 명을 다른 피해자들 앞에서 본보기로 확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기도 한다. 성적 착취의 경우 수치심이 강력한 통제 기제가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을 판매하는 것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인신매매자는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자신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복종시킨다. 특정 문화권 출신의 피해자에게는 특유의 심리적 강압이 효과적이다. 특정 문화 집단에서의 의례, 의식이나 여타 상징적 행위(예, 부두교의식)는 해당 문화권 출신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 인신매매자의 통제권을 강화시킨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피해자를 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문제시되는 협박의 유형은(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복성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협박이다. 많은 경우,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애칭이나 주소 등과 같이 가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각인시킨다. 이러한 협박은 실제로 인신매매자가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하거나 도주함으로써 지인들이 위협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왜 인신매매 사업에 범죄자들이 몰리는가?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윤이 높은 범죄에 속하며, 금전적 이득은 인신매매자와 관련된 범죄 조직망의 주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인신매매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인신매매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설사 방지 법안이 있다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이를 잘 이행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아 인신매매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또한 인신매매자가 한 사람을 매매하는 데 투입하는 초기 비용은 높지 않은 반면, 일단 피해자를 모집한 후 반복적으로 착취하여 얻는 이익은 매우 높다는 점도 알이들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지금까지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방식과 범죄자가 사람을 매매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앞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인신매매

2000년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속의정서를 통해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² 2000년 12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방지, 억제, 처벌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가 조인되었다. 이 의정서의 3조는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a)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 남용이나 상대방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적출 등이 포함된다.
- (b) (a)항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 (c) (a)항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것은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 (d) 아동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2003년 12월 25일에 발효되어 현재 117개국이 서명국으로,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본 의정서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표준화하는 중요한 국제문서이다.³

본 의정서는 가입국가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인신매매의 범죄화
-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서의 피해자 지원과 보호 제공
- 피해자 귀환 지원
-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탐지할 수 있는 이주 관리(예, 국경 통제, 출입국 서류)
- 인신매매의 방지와 근절을 위한 훈련, 연구, 정보 제공
- (서명이나 비준과 관련된) 기술적 조항의 준수

이와 같은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인신매매가 발생하기까지 수단, 행위, 착취의 세 가지 상호의존적인 요소가 누적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하면서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 강압을 행사하는 것이다. 밀입국은 조직적이고 비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다.

잘못된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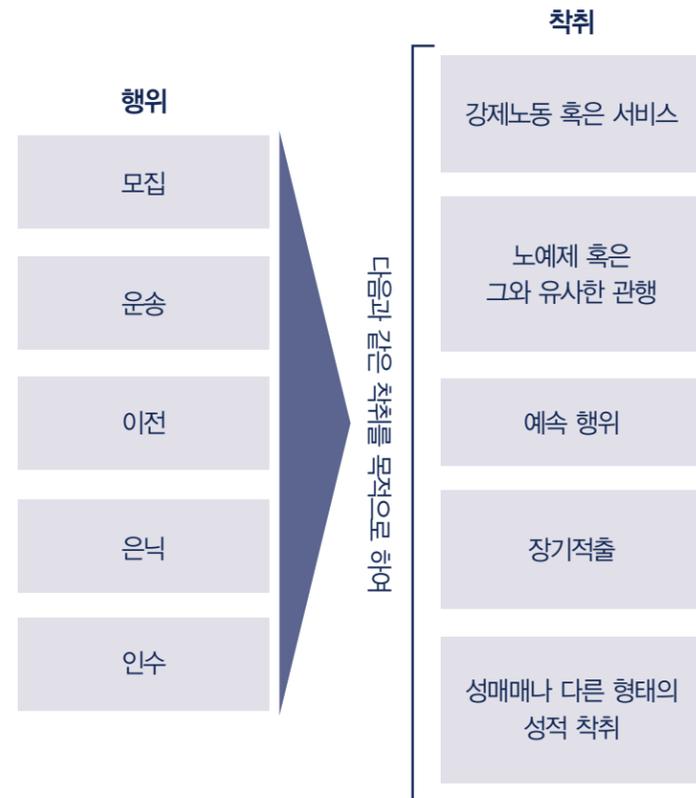
비정규(불법) 이주를 선택한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밀입국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인신매매자는 비정규 입국자를 포함해 갖 도착한 이주자를 희생물로 삼는다.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는 피해자로 확인되는 순간부터 이주 지위와 상관없이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받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인신매매 행위는 앞서 언급된 수단을 통해서 발생하며 행위와 수단 모두 착취적 목적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깊다.

특수한 사례로서 아동

인신매매방지협약의정서는 세부규정 (c)항목에서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 이 항목에서는 인신매매의 성립 요건 중 수단의 필요성을 제외한다. 달리 말하면, 아동 인신매매는 “위협이나 무력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녀를 노상구결과 같은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설령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신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노동에 대한 각국의 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의정서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자 밀입국 중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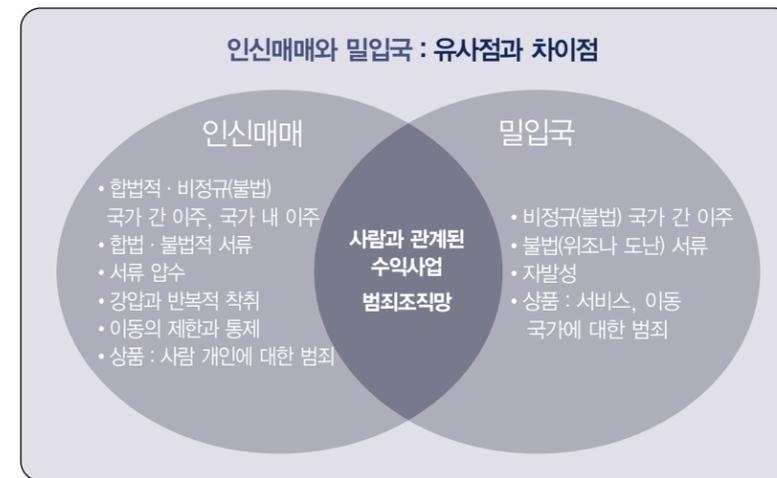
인신매매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인신매매를 이주자 밀입국 중개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유엔은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에 조인하였다. 밀입국방지협약의정서 3항은 밀입국 중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a) 이주자 밀입국 중개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다른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b) 불법 입국이란 입국하는 국가의 법적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국경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은 인신매매와 밀입국 중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람과 관련된 수익사업이고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지만, 실제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밀입국 중개는 불법 입국과 관련이 있다. 이때, 매매는 불법적인 국가 간 이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생한다. 따라서 밀입국 중개는 인신매매에 내재된 착취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신매매에서 매매되는 대상은 사람이고, 이는 이들의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착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신매매는 개인에 대한 범죄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대체로 통제와 강압을 경험하고 이동을 제한받으며 서류를 압수당한다. 이들은 국가 간 혹은 한 국가 내에서 이주를 한다.

이 두 범죄를 구분할 때에는, 범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밀입국 중개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받으려 한다. 인신매매자는 기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을 착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 금전적 혹은 다른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

인신매매는 기회의 부족과 빈곤에 기인한다. 경제체제 전환의 실패, 약한 통치구조, 부정부패,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인한 성차별 또한 인신매매 문제를 악화시킨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가거나 전쟁, 박해,

잘못된 상식

교육을 못 받은 가난한 사람들만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다.

가난 때문에 인신매매에 노출된 피해자도 있지만, 사실 다양한 사람이 매매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잘못된 상식

인신매매는 동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다.

동유럽의 착취적 인신매매와 동남아의 아동 인신매매가 자주 보도되지만, 인신매매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서 발생한다. 세계화와 함께 전 지구의 상호연결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초국가적 범죄의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 국가는 국경 통제와 입국 요건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합법적 이주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목적국에는 여전히 공식적·비공식적 영역에서 다양한 범주의 노동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이 서로 결합되어 비정규 이주와 인신매매의 발생률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인신매매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 인권은 지속적으로 유린당한다.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위협, 구타, 강간을 당하고 혹은 죽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자의 통제 아래 있는 피해자는 대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정규적인 이주 지위로 인하여 당국에서 추방당해 또 다른 피해자가 된다. 또한 인신매매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도 피해자가 겪었던 학대와 관련된 신체적·심리적 결과 및 외상은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강요당했던 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경험이 지역사회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의 귀환을 거부하며 피해자가 지역사회에 재편입하는 것을 막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어떤 국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범죄 집단이 사람을 속이고, 모집하고, 운송하고, 착취하기 위해 해당 경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종종 무기와 마약밀매, 돈세탁과 관련된 범죄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인신매매자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만큼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 및 공공 부문의 불안정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난제에 대한 대응

인신매매는 매년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⁴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 정책 입안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어려운 임무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인신매매 근절 활동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1. 방지
- 2. 보호
- 3. 기소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응은 다양한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동시에, 지역적인 맥락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인신매매자는 이주 동향을 파악하여 잠재적으로 착취가 가능한 이주 집단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계획하는 데 있어 한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의 특수한 기제와 지역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방지 활동은 인신매매 근절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출신국은 인신매매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유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합법 또는 불법으로 국가를 거쳐가는 다양한 이주 집단들 중에 인신매매 집단을 식별해낼 수 있도록 공무원을 교육할 수 있다. 목적국은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착취 상황을 검토하고, 이주자의 노동권 강화에 힘쓰며, 비정규 이주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는 인신매매 근절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본적 필요(예, 쉼터, 의료 및 심리적 지원, 음식과 의복)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사건을 다루면서 기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다. 즉, 피해자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지원 제공자를 인신매매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의 낙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호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회적·정치적·법적 환경 구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타국 출신 피해자가(특별한 경우 당국과의 협조를 위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비자를 마련할 수도 있다. 적절한 법률 제정은 인신매매자 기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법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정의를 실현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보호는 피해자의 지역사회 혹은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돕는 것, 즉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과 재통합을 포함한다.

인신매매자의 기소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종합적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안과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인신매매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어떤 국가는 인신매매자의 자산을 몰수하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기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인신매매 범죄의 초국가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목적국의 문제에만 대처하는 것은 부분적인 해결일 뿐이다.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모두가 긴밀히 협

기억하세요

모든 나라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인지 또는 복합적 성격의 국가인지를 막론하고 인신매매 문제에 취약하다.

력하여 인신매매 기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고 지원하며, 인신매매자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다음의 주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 중심 관점
- 성 인지적 대응
- 협동과 협력관계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법적인 틀을 강화하여 인신매매자를 기소하며, 나아가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중심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관련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임무이지만, 이는 전 지구 공동체가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발전시키고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IOM 2002

사람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이 사진은 IOM 루마니아의 협력으로 템포 광고기획사(Tempo Advertising)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주 /

¹ (역자주) '피해자' 라는 단어의 사용이 취약성과 무력함을 강조한다는 점 때문에 때때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신매매된 상태에서 당국뿐 아니라 인신매매자에게 좌지우지 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현실을 기술하기 위해 본 지침서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계속 취약하다던가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경멸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 지침서의 목적에 맞게, '인신매매 피해자' 라는 말은 인신매매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² 협약과 의정서의 공식문건은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³ 가장 최근의 정보는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TOC/signatures.html>을 참조

⁴ 인신매매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며 추산도 다양하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600,000명에서 800,000명 가량의 사람이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연간 백만 명의 아동이 인신매매된다.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인신매매를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마약밀매 수치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주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비정규 이주나 착취와 관련된 다른 범죄로 체포되어 구금시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잠재적인) 피해자가 구금시설에서 발견될 경우, 시설에서 나오게 한 후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된 환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 밀입국과 인신매매는 다르다.

•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남성, 여성, 아동을 포함한 누구나 될 수 있다.

누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가?

피해자는 현지 상황과 법에 따라 이주국, 경찰 또는 기타 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관련 시민이나 다른 피해자 등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긴급 상담전화^{hotline}를 통해 피해자가 확인되고, 구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착취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술집, 음식점, 나이트클럽, 공장, 성매매업소, 성매매 알선업체, 노동착취공장^{sweatshop}, 마사지업소, 광산, 농장, 사택 등이 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해자 식별은 비정부기구나 국제기구가 수행해야 한다. 인신매매에 관한 국내법이나 국가 정책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개 국가 법률체제 내에 이러한 지원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식별 과정

피해자 식별의 목적²

적절한 식별 과정을 통해 인신매매의 잠재적인 피해자를 밀입국자나 비정규 이주자 또는 인신매매와는 달리 착취적이고 취약한 상황에 처하여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구별함으로써 실제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올바르게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 많은 국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는 비정규 이주자로 간주되어 제대로 식별되지 않은 채 즉시 추방되거나 구금시설에 보내지기도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는 그 밖의 취약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보호와는 다를 수 있다.
-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밀입국자나 기타 비정규 이주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긴급하고 즉각적인 신체적·성적·심리적 의료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 인신매매 피해자는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이므로 지원 단체의 실무자도 관련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하는 경우, 보안과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자신들에 대해 증언하려고 하거나 도주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조직들이 정부간 기구나 비정부기구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침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는 피해자 식별 과정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1.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측정할 수 있는 일련의 식별 지표를 통한 사정
2. 행위, 수단, 착취의 세 요소에 중점을 둔 질문들로 구성된 피해자 식별 인터뷰

피해자 확인과 식별 과정은 인신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전에 각 사례와 연관된 상황을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1단계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에 대한 사정

인신매매는 음지에서 성행하는 범죄로,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대개 피해자는 감시자 없이 이동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별 지표가 있다.

아래에 열거된 지표들은 전반적인 사정 과정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일반화된 지표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지의 환경과 경험을 반영하여 지표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는 실무자는 상황에 맞게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하나의 지표가 해답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통 지표]

-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거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 노동의 대가로 돈을 거의 받지 못한다.
- 불결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고용인과 함께 산다.
-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늘 감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 절상, 화상, 멍과 같은 가시적인 신체적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매일 일정액을 벌어야 하거나 일정수의 고객을 접대한다.
- 복종적인 행동을 보인다.
- 우울증, 불안, 자해, 자살 행위와 같은 감정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문제를 보인다.
- 상업시설(성매매업소, 가라오케, 클럽, 마사지업소 등)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고립된 장소, 전자감시와 같은 강력한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고객이나 성행위의 내용 또는 콘돔의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 채무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

[다른 평가 지표]

연령 :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신매매에 연루될 확률이 낮아진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아동과 젊은 성인에 대한 인신매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중요

각 지표는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판단을 내릴 때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성적 착취나 강제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는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인신매매자와 그와 관련된 자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노예제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육체노동에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인신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객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을 선호하므로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밀매의 경우에도, 인신매매자와 구매자는 어리고 건강한 사람을 선호한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인신매매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는 길거리 구걸을 강요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발생한다. 또한 가사노예를 위한 인신매매의 경우, 연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성별 : 인신매매와 성별의 연관성은 착취의 장소와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는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성적 착취를 위한 남성 인신매매, 특히 남자 청소년과 아동의 인신매매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적 : 피해자 공급 사슬은 빈곤, 차별, 기회의 부족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착취에 의존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선진국 출신인 경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면, 선진국 출신의 피해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과 경험 :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사람은 앞서 나열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확인된 정보가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대한 자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현지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2단계 : 인신매매의 정의에 대한 탐색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 식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제3조에 포함된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 표준 정의를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신매매의 정의에 기초하여, 잠재적인 피해자가 성인인지 아동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아동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입증하기 위한 기준에서 수단과 관련된 요소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성인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행위, 수단, 착취(또는 착취의 의도)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충족시킬 때 성립된다.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행위와 착취(또는 착취의 의도)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구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행위** - 인신매매자와 밀입국 중개자 모두 사람을 운반, 이송한다. 그러므로 양자 모두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거하여 범죄의 행위를 저지른다.

- **수단** - 밀입국 중개자는 일반적으로 3조에 열거된 수단에 해당하는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강압, 기만, 권력의 남용으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요소가 없다. 따라서 인신매매 범죄의 필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밀입국은 인신매매와 구별된다. 대부분의 밀입국 이주자는 국경을 넘어 제3국에 밀입국하려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밀입국 중개자와 접촉한다.

- **착취** - 밀입국 중개자도 이주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정서상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주자 착취를 위해 밀입국을 알선하는 것은 아니다. 밀입국 중개자와 밀입국 이주자의 관계는 오직 금전적 대가에 따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에만 유지되며, 양자의 관계는 불법 입국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종결된다. 인신매매자와 달리 밀입국 중개자는 이주자가 입국한 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결정내리기 : 이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인가?

피해자 식별 과정에서 행위, 수단, 착취의 세 가지 관련 요소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로 첨부자료에 제시된 피해자 식별을 위한 인터뷰 서식을 참고하라.)

행위 : 첫째, 개인이 모집, 운반, 이송, 은닉, 혹은 인수되었는가? 위의 행위 중 최소한 하나라도 '그렇다'는 답변이 나오면, 관련된 수단을 검토하라.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면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다.

다음은 행위 요소를 검토하기 위한 몇 가지 예시 질문이다.

- 어떻게 접촉이 시작되었나?

접촉은 인신매매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연락망을 통해 시작하거나 해외 취업 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을 취함으로써 시작된다. 인신매매에 앞서 인신매매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피해여성의 애인이 된 후 그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것은 밀입국 사례와 대비되는데, 밀입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한 국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밀입국자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국내 인신매매의 경우, 특히 강제노역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당사자나 가족과의 직접 접촉으로 간단하게 모집이 이루어진다. 아동의 경우는 가난한 부모에 의해 매매되거나,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는 부모가 모집인에게 아이를 보내기도 한다.

- 당사자가 착취를 목적으로 강제로 출신국에서 이동하게 되거나 또는 해당 국가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는 유괴되기도 한다. 유괴는 인신매매가 개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억하세요

아동이 인신매매 피해자인지를 식별할 때에는 수단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매우 강력한 지표이다.

- 국경을 넘었는가? 그렇다면 밀입국하였는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들어왔는가? 만일 공식적으로 입국했다면 입국을 위한 서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류인가, 아니면 위조된 서류인가? 혹은 허위 비자가 사용되었는가?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도보로 또는 차량에 숨어 비밀리에 국경을 건너게 된다. 그러나 상당수는 실제 서류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때, 허위 비자 또는 도난당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동은 행위가 발생하는 맥락과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인접국으로의 입국이나 지역 내 이동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쉬운 반면에 거리가 있는 국가로의 이동이나 입국은 공식적인 이동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서류가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항공, 철도, 선박을 통한 원거리 이동은 출입국 심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기로 피해자를 모집한 경우,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의심받지 않고 합법적인 이동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 본인의 서류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단 : 이동요소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가 강요, 위협, 강압, 유괴, 사기, 기만을 당했는지, 혹은 권력의 남용에 종속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일 이들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또는 착취 의도)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착취요소를 검토한다. 피해자가 성인이고 어떤 수단도 사용되지 않았다면, 인신매매 피해자로 볼 수 없다.

다음은 수단요소를 검토하기 위한 몇 가지 예시 질문이다.

- 출신국 내 타 지역이나 해외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받았거나 기대하였는가?

인신매매 피해자는 판매원과 같이 특정 직업을 약속받지만 가사노동과 같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 최종 목적지에서 제안 받거나 약속받은 급여나 근로 조건은 어떠한가?

인신매매는 넓은 범주의 착취적인 상황을 포함하며, 인신매매 환경과 인신매매자의 작업 방식에 따라 일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 고지 여부가 결정된다.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일의 성격 또는 근로 조건에 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만당한다는 점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자신이 하게 될 일이나 활동에 대해서 기만당할 수 있다. 피해자

는 자신이 하게 될 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지만 자세한 근로 조건이나 급여 수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과 여아는 자신이 음식점 종업원이나 무용수로 일하게 될 것은 알더라도, 실제로는 '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신매매자가 일의 성격을 미리 알려주더라도 근로 조건, 즉 거의 무급으로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게 될 것은 알려주지 않는다.

- 선금을 주고받았는가?

인신매매 범죄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해 발생되기 때문에 자금처리 방식이 핵심이다. 그러나 단지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용이나 가사노동의 목적을 위해서도 인신매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신매매는 대개 인신매매자가 피해자와 일종의 채무 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의 수입을 몰수하고 그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형태의 채무 구속과 관련이 있다.

- 피해자의 신분증명서류는 누가 보관하는가?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도주를 우려해 피해자가 자신의 서류를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 서류 갈취는 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통제 수단이다. 그러나 서류 미소지는 망명과 밀입국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임을 기억하자.

착취 : 행위와 수단 두 요소의 조건이 충족되면, 착취 여부 또는 착취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예, 강제징병), 예속 행위, 장기적출이 포함된다. 이런 착취의 형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이다.

다음은 착취요소를 검토하기 위한 몇 가지 예시 질문이다.

-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했는가?
- 수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는가?
- 일을 그만둘 수 있었는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는가?
-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했는가?
- 가족과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었는가?
- 성적 학대나 희롱을 당했는가?

주 /

¹ (역자주) 낙타 경주는 아라비아 반도의 전통스포츠로 낙타의 몸에 기수를 묶어 달리게 한다. 기수로는 주로 몸이 가벼운 6~7세 미만의 어린 소년이 선호되며, 이들은 경기 중에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기수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에서 인신매매된 아동이 기수로 동원되는 심각한 국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²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25~65



중요

인터뷰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만약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의 맥락이나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통역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18세 미만)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예, 정신장애나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이 책에 제시된 지침과 함께 관련된 다른 특수한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예,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 후견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개인 등)

인터뷰 기술²

인신매매 피해자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신중하면서도 의심이 많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별 인터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터뷰 진행자에게 정신적 외상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의심하고,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러한 모습이 혼재된 태도로 반응하는 일은 흔히 일어난다. 따라서 최초 인터뷰만으로는 인터뷰 대상자가 실제로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는 충격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인터뷰를 할 의향이 없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무기력하거나 말을 삼가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자신이나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거나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겪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억할 수 없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피해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정보를 기억해 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인터뷰 진행자는 먼저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인터뷰의 목적이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함이며 이는 인터뷰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최초 인터뷰 진행 방식은 인터뷰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상태와 반응 및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내린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인터뷰 대상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 진행자는 각 사례별로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아래의 정보는 식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사례에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인터뷰의 형식은 인터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단계 : 인터뷰 장소 준비

인신매매의 잠재적인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는 작업은 중요하다. 첫 만남이 지원 과정을 설계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시간 동안 피해자는 지치고, 혼동되고, 혼란에 빠지거나 두려워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터

뷰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말하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만일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꺼려하면 다음으로 대화를 연기하도록 하라.

첫 만남은 잘 준비되어야 한다. 방해받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대략 한 시간 정도)을 확보해야 한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일대일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한다. 인터뷰 진행자와 통역사를 정할 때 나이, 성별, 종교,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 만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의 라포 형성 및 신뢰 구축
-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
- 초기 정보 제공
- 피해자의 사전 동의 확보
- 인터뷰 대상자의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 최종 식별

만일 당사자가 여전히 인신매매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인터뷰를 하는 것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인터뷰 진행자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인터뷰는 안전하고 보안이 잘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인터뷰를 위한 장소 준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 가능하다면 타인이 엿듣거나 방해할 수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한다.
- 인터뷰에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다. 피해자와 인터뷰 진행자, 필요하다면 통역사와 아동의 보호자, 법률·심리상담가와 같은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다.
- 인터뷰 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력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동원해 통역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 휴대전화는 반드시 꺼놓아야 한다.
-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 문 앞에 “방해하지 마시오.”와 같은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뷰 진행자는 가급적 인터뷰 내용이 밖에서 들리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 단정적이거나 심판하는 듯한 태도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2단계 : 인터뷰 소개하기

- 인터뷰 진행자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단체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다.
- 인터뷰 대상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지 확인한다.
- 인터뷰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한다거나 마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인터뷰 대상자가 고통이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응급 진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 인터뷰 대상자가 긴급한 의료 문제를 호소한다면 의료 전문가가 이를 검진하기 전에는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
- 두통과 같은 경미한 증상을 보일 경우 처방이 필요 없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소염제)과 같은 약물을 제공한다.
- 앞으로 일어날 절차나 활동을 설명해야 한다. 일정, 기간, 장소와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단계 : 인터뷰 설명하기

- 인터뷰 대상자가 존중받고 있고 자신의 견해를 믿어주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라포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 인터뷰 대상자에게 앞으로 진행될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 인터뷰 대상자에게 인터뷰 중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힘든 기억을 되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 인터뷰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준다.
-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단체는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덧붙인다.
- 만일 단체의 한계로 인하여 인터뷰 대상자가 해당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적합한 기관이나 지원 제공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알려준다.
- 인터뷰 대상자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설명된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반복해서 설명 또는 진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인터뷰 대상자가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현 단계에서 질문이 있는지 물어본다.
- 인터뷰 진행과 참여에 동의하는지 물어본다.

4단계 : 인터뷰 시 지켜야 할 원칙³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터뷰 할 때,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피해자와 인터뷰 진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한다. 윤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인터뷰를 적절하게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피해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 지켜야 할 다음의 원칙들을 명심하자.

•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취약한 상태이며 외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기본 원칙

은 매우 중요하다. 인터뷰나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중단해야 한다. 안전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 인터뷰 진행자는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안전, 보안과 편안함을 보장한다.

인터뷰 대상자와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안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의료 지원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인터뷰를 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말하더라도 인터뷰하는 동안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포착되는 경우(예, 극도의 불안, 소진, 심리적·신체적 문제 등)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뷰를 즉각 중지하고, 피해자를 의료 전문가에게 연계해야 한다.

• 비밀을 보장한다.

비밀보장은 인터뷰 진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 중 하나이다. 비밀보장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려는 피해자의 의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피해자에 관한 정보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간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공유되어야 한다.

• 정보를 제공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정보에 대한 권리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 복지,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지원 제공자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내릴 수 있는 선택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자신의 신체와 선택에 관한 일종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역량강화의 한 과정이다.

• 충분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사전 동의를 요청한다.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기본권이다. 피해자가 인터뷰 내용과 목적, 정보의 사용용도에 대해 알 권리,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사전 동의를 얻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언어적·문화적·사회적 차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도한 존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 상대방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 질문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 그리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만남을 속히 끝내려는 마음 등은 실질적인 사전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벽들이다.

• 세심하고 분별력 있게 질문한다.

질문의 구성과 표현 방식, 어조 등은 대상자로부터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대상자를 괴롭히거나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

•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경청한다.

능동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화자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능동적인 듣기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말하기보다는 듣는다.
- 질문을 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명확히 한다.
- 대답할 시간을 준다.
-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한다.
- 통찰력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핀다.
- 피해자가 말한 바를 인정한다.
- 피해자가 휴식을 필요로 하는지 살핀다.

• 지원 제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 점검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일하는(또는 피해자를 식별하는) 사람은 인종,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피해자가 착취당했던 업종, 종교, 성별, 문화 및 기타 요소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인지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 믿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는 신뢰에 기초한다. 지원 제공자는 지원 대상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도록 해주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피해자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임을 확인시킨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인신매매 피해자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속이거나 자신이 이전에 설명한 것을 숨기고 바꾸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특정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거나 이야기의 일부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거나, 그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전문성을 유지한다.

전문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피해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자의 위치(즉, 정보, 서비스 또는 상품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는 흔히 거부장적인 어조를 취하거나 심지어는 지적·작업적 우월감을 풍기는 태도를 보여 지원받는 사람을 무력하고 복종적으로 만든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인해 강제로 복종했던 사람에게 특히 해롭다.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과 의존성을 수용하면서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가 쉽다. 전문가로서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와 품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감하고 위로해야 한다. 지원받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결정이 존중받는 평등한 관계라고 느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으며, 지원 제공자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와 의사소통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 과정에서 한 사람이 지휘와 안내를 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가 현재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있고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가 어떠한 만남도 강제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며 진행 절차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선택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하고, 모든 결정은 오직 피해자 스스로 내리는 것이며 아무도 대신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선택사항을 고려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피해자가 내린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재확인시킨다.

자책은 인신매매 경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이 피해자 탓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가 기만 당하거나 혹은 강압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는 죄책감을 덜어내고 자기용서와 치유를 할 수 있게 하며, 지원 제공자가 피해자를 판단하거나 탓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

개인의 안전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완벽한 보안이란 없다.
- 개인 보안은 위협사정 및 관리 그리고 개인 보안에 대한 책임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주의

아동은 가난한 부모에 의해 매매되거나,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는 부모의 허락 하에 모집(친척 혹은 먼 인척관계의 사람을 포함)에게 보내지기도 한다. 대개 부모는 아동이 돈을 벌거나 유용한 기술을 배우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인터뷰 진행자는 아동의 부모를 탓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자녀를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비록 위험 수준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하는 모든 실무자는 이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신매매와 안전에 관한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해 경계를 늦추서는 안 된다. 인신매매와 관련이 되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특히 유념해야 한다.

아동 인터뷰를 위한 가이드라인⁴

아동 인터뷰는 성인 인터뷰와 매우 다르다. 아동이 인터뷰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인터뷰 진행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불안해하고 화를 내거나 슬퍼한다면, 인터뷰 전에 갖고 놀 장난감이나 동물인형을 줄 수 있다. 전문 인력이 있다면 해당 아동의 또래와 함께 인터뷰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인터뷰의 모든 과정에 있어 아동의 대략적인 나이, 성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히 질문 유형과 질문 방식, 인터뷰 진행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필요가 다를 수 있다. 이들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뷰 진행자는 개별 사례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인터뷰 진행자는 질문하는 동안 아동의 반응, 비언어적 행동, 독특한 버릇, 진술 내용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동을 인터뷰할 때 다음의 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⁵

- 아동의 특별한 필요와 권리에 관해 교육을 받은 실무자들만이 피해를 담당하고 인터뷰해야 한다. 가능하면 피해 아동과 동일한 성별의 실무자가 인터뷰를 담당한다.
- 대화를 하는 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라포 형성을 돕기 위해 장난감과 책 또는 게임 도구 등을 그 공간에 배치한다.)
- 인신매매 경험과 관련 없는 놀이를 하거나 아이에게 친숙한 주제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라포를 형성한다.
- 꾸밈없고 격의 없는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심문하거나 대답을 강요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아동과 놀 때 함께 바닥에 앉는 것을 고려해 본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소통한다.
- 아동에게 적절하고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시각 자료를 사용한다.) 질문은 해당 아동의 연령과 지적 능력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 아동이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 사람이 너를 학대했니?”와 같은 유도 질문을 피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니?”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한다.
- 아동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야기한 것 같은 기미를 보일 때에는 상세한 내용을 추궁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된 질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관련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거나 인터뷰 진행자가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대답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아동에 대한 인터뷰는 가능하면 부모의 동석하에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전 교육을 받은 후견인, 심리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동석해야 한다.
- 인터뷰를 마칠 때에는 잘했다고 말해주며 해당 아동을 안심시키고 다시 이야기 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주며 마무리하도록 한다.⁶

피해자 식별 과정의 한계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절차는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된 개인에 대한 확인 절차의 무오류를 보장할 수 없다.
- 본 지침서에 제시된 절차는 인신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과 피해자 식별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 국내적·지역적·국제적 맥락에 따라 본 지침서에 제시된 많은 사항들이 모순되거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 단체들은 현지 상황과 조건에 맞춰 기본 개념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본 식별 과정은 일반적인 틀을 제안하는 것으로, 현지 지원 단체는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식별 과정을 활용해야 한다.
- 본 식별 과정은 이상적인 조건 하에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환경은 드물다. 많은 경우에 사전 인터뷰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대상자가 질문에 응답할 의지가 전혀 없거나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 또한 추가 입증 자료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
- 결국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과 확인은 현지 지원 단체 실무자의 경험과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는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한 누락된 사정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주 /

¹ C. Zimmerman, WHO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on Interviewing Trafficked Women, 2003

²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³ 위의 책, 「부록 I: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과 인터뷰 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참조 바란다.

⁴ 국제이주기구(IOM),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아동』, 미출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Children, IOM, Geneva, 2006

⁵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⁶ Home Office, Crown Prosecution Service, et. al.,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Guidance for Vulnerable or Intimidated Witnesses, including Children, London, 2001



주의

지역사회나 국가에 따라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지역사회가 구체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안정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살펴도록 한다.

- 피해자 확인 과정의 주요 행위자
- 피해자 확인을 위해 제안된 실행 계획
- 허용사항과 금지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인터뷰 기술
- 인신매매방지정책서를 기준으로 한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람들의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 피해자 식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한다.
- 인신매매 기준과 인터뷰 지침을 제시한다. 이미 존재하는 기준과 지침은 재검토와 개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떤 의식함양 방안이 필요할지 개괄한다. 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인신매매, 인신매매방지정책서, 관련 국내 법제를 주제로 정보 브리핑 실시
 - 인신매매의 정의, 인신매매된 이주자와 밀입국한 이주자 간의 차이점에 대한 교육
 - 구금시설에 있는 이주자에 대한 사례 검토를 통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
 - 피해자 식별과 인터뷰 기술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세부적인 일정표에 맞추어 설정한다.
- 주기적인 검토 및 조정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모든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 및 책임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관련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와 같은 협력 계약을 통해 공식화할 수 있다. 양해각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협력의 기본 원칙과 개별 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체결되어야 한다. 만약 협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양해각서를 최종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일단 실행 계획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 인권에 기초한 피해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피해자 식별과 지원과정은 앞서 설명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필요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중요하다. 실행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화

기관 간에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가 모든 절차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한을 가진 여러 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특정 사법 권한이 있는 법 집행 기관은 이주국이나 세관과 같은 법 집행기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과 외교부에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간의 협조, 국제기구와 기타 시민단체간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

정해진 역할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원이 제공되는 동안 특정 기관이 전 과정을 독점하지 않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체가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 운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 혹은 태스크포스 결성을 통한 대화 절차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화 절차는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신매매 사례를 처리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운영상 공조가 결렬될 수도 있고, 인신매매 방법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정치적 환경이 변하는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견해와 입장이 아무리 다르다 해도, 대화와 열린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각 모임의 회의록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논의사항을 제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추가적인 기준과 진행 상황에 대한 책임을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 식별의 장애물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두 가지 중요한 장애물, 즉 이주 범죄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 기존 이주법이나 기타 법제도 그리고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국가적 정책 부재가 피해자 식별을 방해할 수 있다. 국내 법률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다면 법 집행 기관, 지원 제공기관 및 기타 기관은 지원과 보호 제공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 기관들은 법적 의무를 방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된 이주자가 이주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주자를 구금 상태에서 구출하여 정부 혹은 비정부기구의 쉼터로 옮기는 것이 비정규 이주자를 돕고 선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주 /

¹ 국제이주기구(IOM),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협력과 네트워크』, 미출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Cooperation and Networking, IOM, Geneva, 2006



NOTES: _____

5장 돌아보기

PART FIVE LOOKING BACK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일은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장은 지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한 후 피해자 식별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지표의 예를 설명한다.

지표(Indicators)

지표란 무엇인가?

지표는 양적 또는 질적 기준으로서 성취, 변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하고 믿을만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운영, 서비스 및 과정의 특성과 실행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수단이다. 또한 성과를 측정, 감독, 평가,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성과 지표는 특히 개입의 결과를 검증하거나 계획한 바와 비교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이다.

성 인지 지표는 주어진 맥락 속에서 특정 기간 동안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측정함으로써 성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지표가 왜 중요한가?

성과 지표는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개입의 성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수단이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지표는 개입 종료 시에도 매우 중요한데, 설정한 목적과 목표에 비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이자, 경우에 따라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상세한 초기 데이터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입을 통해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더욱 장려하는 등의 옹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점점 늘어가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역량과 자원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동시에 지표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양적·질적 정보는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입 계획과 지원 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지표는 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실행 결과를 측정해보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 양적이든 질적이든, 지표는 개입에 관련된 실행자, 수혜자, 기부자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돕는다.

종종 지표를 결과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지표는 개입의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생산된, 측정 가능한 직접적 결과물이다. 반면, 지표는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어떻게 지표를 개발하는가?

개입의 목적과 예상결과 그리고 개입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선택될 수 있다. 이때, 지표는 너무 많을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이고 서로 독립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 또한 지표는 취할 수 있는 정보, 역량과 자원, 적절한 검증 수단을 통해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자들과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자들은 직접 기준 설정을 지원할 수 있고, 취약점이나 외부 방해 요인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명확히 표현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스마트(SMART)지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체적일 것(Specific) : 규모와 시간 면에서
- 측정 가능할 것(Measurable) : 목표 실행 결과에 따른 변화를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달성 가능할 것(Attainable) : 지표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만 하고 접근 가능할 것
- 관련성이 있을 것(Relevant) : 외부 요소의 영향보다는 개입의 영향을 반영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 추적 가능할 것(Trackable) : 지표는 현재 사용 가능하거나 사업 관리의 일부로 수집될 자료들을 이용할 것

마지막으로 성 인지적인 지표를 위해 최소한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피해자 식별 과정 평가하기

평가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한다. 피해자 식별 과정의 원래 목표는 무엇인가?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혹은 피해자 인터뷰 기준을 포함한 피해자 식별을 위한 운영상의 지침을 확립하는 것인가? 만일 식별 과정이 고립된 몇몇 인신매매 피해자의 즉각적인 귀환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면, 해당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식별하는 것만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식별 과정의 목적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향상시켜 피해자의 필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인신매매된 이주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범국가적인 인신매매 방지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이를 장기적인 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성공 여부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 1) 제도적 구조 평가 - 투명한 국가 정책 및 기준의 확립, 지원 제공 역량의 향상
- 2) 피해자 식별 결과 평가 - 성공은 피해자 식별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운영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성취되었는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혹은 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도적 구조 평가

- 국가위원회, 혹은 유사한 공조 집단의 설립
- 국가적 실행 계획의 초안 잡기
- 피해자 지원 대책의 주요 윤곽을 명확하게 표현한 인신매매 국내법의 초안 작성 또는 개정사항 이행, 예를 들어
 - 피해자 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 피해자를 범피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지하는 피해자 친화적인 절차
 - 이주자 가운데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국가별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와 대책
 - 피해자를 구치소, 감옥, 구금시설 및 기타 유사 환경에서 구출하여 보호 시설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절차상 협약
 - 인신매매 피해자 인터뷰에 대한 가이드라인
- 사법기관, 사회복지부, 기타 관련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대략적으로 명시하는 국가 정책의 초안 잡기
 -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담당자를 위한 피해자 식별 가이드라인의 개발
 - 인터뷰 가이드라인의 개발
 - 피해자의 식별, 보호(쉼터 제공), 귀환과 재통합을 촉진시키는 기관 사이의 협조 증진을 위해 표준운영절차(SOP)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 피해자 확인을 위한 절차체계에 대해 국가와 양자 간 합의 혹은 양해각서를 채택한다. 이러한 규약이 대략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인신매매의 정의
 - 관련 부서와 기관
 - 절차 기준과 지원 기준
 -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보교환 프로토콜
 - 보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

피해자 식별 결과 평가

- 피해자 확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목적국 내 형성되었는가?
- 구금시설에서 분리된 피해자 수가 증가하였는가?

- 귀환, 회복, 재통합 사후점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계된 피해자 수가 증가하였는가?
- 적절한 지원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피해자 수가 증가하였는가?
- 인터뷰 과정 중 피해를 입은 인터뷰 대상자 수가 감소하였는가?
- 인터뷰 중 피해자가 표준 수준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졌는가?

성공 여부 판단하기

이와 같은 기준 확립을 넘어서, 의도한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데 실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재점검하는 것과 같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과정을 구축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에게 피해자 중심의 인도주의적 귀환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가 증가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신매매된 이주자를 범죄자가 아닌 착취의 피해자로 인정하여, 비정규 이주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추방 절차 기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예외로 하는 작업이다.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구금시설로부터 구출
-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특별한 지원을 제공함
- 이송(국제 인신매매의 경우)이나 강제추방 또는 강제송환에 대한 대안으로 적시에 본국이나 본 지역사회로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을 용이하게 함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인신매매된 이주자는 재통합 이전과 이후에, 인도주의적 원칙, 국내 법률 및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는가?
- 인신매매된 이주자는 자신의 권리와 선택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가?
- 전 과정에 걸쳐 사례 비밀보장과 이주자 보호가 이루어졌는가?
- 자발성의 원칙이 지켜졌는가?
- 인터뷰하는 동안 피해자가 다시 외상을 입었는가?

만일 이 기본 원칙이 장기적인 대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졌다면, 전반적인 목표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동일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끊임없는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 평가할 수 있는가?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수혜자** : 피해자는 지원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도록 개발된 평가양식을 사용하여 지원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쉼터를 떠나거나 지원 과정을 종결할 때(목적국 또는 출신국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제공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예, 일대일 대화나 대표 집단을 통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 지원이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는 피해자의 피드백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 **지원 제공기관** : 모든 지원 제공기관은 지속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교류와 지원 내용을 매일 검토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체 평가를 통해 얻은 교훈은 전체적인 기관 차원의 평가에 통합되어야 한다. 직접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우수한 실천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만일 여러 기관이 지원 제공에 참여한다면, 다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 **외부 평가자** : 관련 분야의 전문가(예, 사회복지사, 보건 전문가, 인신매매 전문가), 조사기관, 평가 전문가 등이 외부 평가를 담당할 수 있다. 외부 평가자는 보통 지원 과정 및 구조와 관련해 보다 독립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외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언제 평가할 것인가?

평가는 주요 지원 단계가 마무리될 때, 예를 들어 피해자가 쉼터를 떠날 때, 일정 기간의 재통합 지원이 이루어진 후, 혹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평가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단체에서 실시하는 내부 평가는 매달 있을 수 있지만 외부 평가는 일년에 한 번 실시될 수 있다.

평가는 지원 과정(한 가지 지원 사례와 전체 지원체계를 지칭) 종료 시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 과정을 통해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는 개선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체계의 구성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주의

정부 역시 지역적·전국적 차원에서 외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행위

출발 전에 이동 비용이 필요했다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가?

이용한 운송 수단을 자세히 기록하십시오.
(도보 / 차량 / 선박 / 기차 / 항공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국경을 넘었는가? (네 /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공식 검문소를 통해서 들어갔는가?

입국 시 본인의 신분증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위조된 서류였는가?
(본인신분증 / 위조서류 / 해당사항 없음)

출입국 시 비자가 요구되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신분증은 현재 누가 소지하고 있는가?
(본인 소지 / 고용인 소지 / 경찰 소지 / 인신매매자 소지 / 해당사항 없음)

해당 국가에서 특정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네 / 아니오)

경유국에서 체류하였는가? (네 /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경유국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였는가?
(숙식가사도우미 / 보모 / 농장일 / 가사일 / 공장노동 / 판매 / 구걸 /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 / 강제징용 / 무용수 / 성매매 / 서빙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착취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어떤 일에 종사하였는가?
(숙식가사도우미 / 보모 / 농장일 / 가사일 / 공장노동 / 판매 / 구걸 /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 / 강제징용 / 무용수 / 성매매 / 서빙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기타인 경우,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얼마 만에 위와 같은 일을 시작하였나?
(도착한 주부터 / 도착 일주일 후부터)

특정한 일에 종사하도록 강요받았는가? (네 /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었는가? (협박 / 신체적 폭력)

이러한 일을 통해 번 급여는 얼마였는가? (1개월 기준)
수익을 가질 수 있었는가? (네 / 아니오 / 일부)

모집책 / 운반책 / 착취자에게 빚을 갚아야 했는가? (네 /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개월 수)

어떤 명목의 빚이었는데?

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는가?
(절대 금지 / 동행인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 / 금지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착취의 조건과 통제 수단은 어떠한가?
- 장시간의 노동
- 자유 박탈 / 제한적 허용
- 신체적 학대 / 폭력
- 서류 갈취
- 사회적 격리
- 추방의 위협
- 개인적인 협박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
- 기타

입증자료

추가적인 입증 자료
- 경찰기록이나 출입국 기록
- 출입국 서류 또는 여행 티켓
- 출입국 신고서
- 인신매매 기간 중 겪은 학대와 연관된 의료 기록
- 사기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원 고용광고 사본
- 피해자의 일기 또는 서신

결정

인터뷰 대상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인가? (네 / 아니오)
만약 아니라면 :
(밀입국 이주자 / 다른 종류의 범죄 피해자 / 불법 이주자 / 의심받는 침입자)

대상자는 기꺼이 귀환하고자 하는가? (네 / 아니오)

대상자는 IOM의 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가? (네 / 아니오)
적합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지원 거절 / 출국명령을 받음 / 침입자로 의심됨 / 기타)
기타인 경우,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IOM의 지원을 거절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워서 / 현지에 남아있고 싶어서 / IOM이나 비정부기구를 신뢰하지 않아서 / 기타)
기타인 경우,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참고사항

강제징병 (Forced Military Conscription)

전시 상황의 민간인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4차 제네바 협약(The Fourth Geneva Convention)」에 의하면 “점령군은 피보호자에게 자국의 전투 또는 비전투 군대에 복무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전문 참조 :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739003e636d/6756482d86146898c125641e004aa3c5>

관련 용어 : 소년병, 착취

격리 (Isolation)

격리는 인신매매자가 통제와 강압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분증이나 출입국 서류 제거 및 언어적·사회적 고립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 통제, 강압, 신분증명서류, 출입국 서류

경유국 (Country of Transit)

이주자가 거쳐 가는 국가, 이주 흐름이 통과하는 국가(합법/불법적 이주에 상관없이 해당)

관련 용어 : 출신국, 목적국

국내 인신매매 (Internal Trafficking)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귀환 (Return)

귀환은 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이동하거나 수용국/경유국/목적국으로부터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귀환의 방식에 따라 자발적 귀환, 강제적 귀환, 지원 귀환, 즉각적 귀환으로 나눌 수 있다. 혹은 난민이나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과 같이 귀환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³

기소 (Prosecution)

피고인을 심리하기 위한 형사 소송 절차를 의미한다.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이다. 기소는 법률과 정책 강화, 범죄 처벌 강화, 역량강화, 국내 및 국가 간 협력(예, 비정부기구와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 방지, 보호

납치 (Kidnapping)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유괴 또는 개인이나 집단을 감금하는 것으로, 보통 납치된 피해 당사자나 그 외 제3자에게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형사법 처벌 조항에 의거하지만, 해적 행위와 같은 특수한 납치 사건은 국제법을 따른다.⁵

관련 용어 : 유괴, 모집(강제적인 경우)

노예제 (Slavery)

“한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일부 혹은 모든 권력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행사되는 상태나 조건” (1953년 의정서로 개정된 1926년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제1조) 노예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강압과 통제를 가하거나, 자유롭게 일터를 옮기고 그만 두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예, 전통적인 노예제, 채무노동, 농노제, 강제노동, 의식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노예제 등)

전문 참조 : <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ry.htm>

관련 용어 :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목적국 (Country of Destination)

이주자가 이동하여 도착하는 국가, 이주 흐름의 목적지가 되는 국가(합법/불법적 이주에 상관없이 해당)

동의어 : 수용국(Receiving Country)

관련 용어 : 출신국, 경유국

미성년자 (Minor)

자국법에 의거한 성인 연령보다 연령이 낮으며,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칭한다.⁶

관련 용어 : 아동

밀입국 중개자 (Smuggler (of Migrants))

계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지된 국경 너머로 사람들을 불법 이송시키는 중개자

관련 용어 : 이주자 밀입국 중개

방지 (Prevention)

기존의 또는 발생할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방지 행위를 가리킨다.⁷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방지는 정보와 의식증진 활동, 연구, 세미나, 교육, 협력과(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관련 용어 : 기소, 보호

보호 (Protection)

보호는 위협에 처한 개인이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권리와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보호한다는 것은 개인이 권리를 지니며,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당국에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법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보호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피해자 보호에는 쉼터 제공, 의료적·심리적 지원, 비자 획득 지원,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안전 보장, 국내외 협력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 방지, 기소

보호자 비동반 아동 (Unaccompanied Child)

“준거법이 아동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인 자를 지칭하며, 보호자 비동반 아동은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법이나 관습에 의하여 아동을 돌볼 의무가 있는 성인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1997년 「보호를 청하는 보호자 비동반 아동에 관한 정책과 절차 안내(Guidelines on Policies and Procedures in Dealing with Unaccompanied Children Seeking Asylum)」 3.1, UNHCR)

전문 참조 :

<http://www.unhcr.org/publ/PUBL/3d4f91cf4.pdf>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자, 강제 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 환경 이주자, 불법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입국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위조된 문서로 입국하였거나 비자 기한을 초과한 사람”을 말한다. (World Migration, 2003; Skeldon, 2000; Irregular Migration, 1999)⁹ 송출국, 경유국, 수용국의 규제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이동이다.¹⁰ 비정규 이주에 대해 명확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수용국의 시각에서 비정규 이

주의 정의는 자국으로의 불법 입국, 자국 내 불법 체류 또는 불법 노동으로서, 이는 해당국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입국, 거주, 또는 노동을 위해 요구되는 허가증이나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이주자를 의미한다. 송출국의 시각에서 비정규 이주는 유효한 여권이나 출입국 서류가 없이 국경을 지나거나 정부의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¹¹

동의어 : 불법 이주, 밀입국(Clandestine Migration)

반의어 : 정규 이주, 합법적 이주

관련 용어 : 이주자 밀입국 중개

성 인지 지표 (Gender-Sensitive Indicators)

특정 환경에서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난 성 평등에 관련된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성과 남성의 지위 변화를 나타내주어 성 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관련 용어 : 지표, 성과 지표

성과 지표 (Performance Indicator)

개입의 결과로 생긴 변화를 또는 계획한 바와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지표

관련 용어 : 성 인지 지표, 지표

성매매 (Prostitution)

성적 행위를 전제로 배우자나 파트너 외의 타인에게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¹²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매매의 맥락에서 성적 착취는 성매매, 포르노, 선정적인 춤, 섹스관광, 강제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성, 여성, 아동 모두가 될 수 있다. 성적 착취는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 of 1949)」과 1993년 「여성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다.

전문 참조 :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739003e636d/6756482d86146898c125641e004aa3c5>

[http://www.unhcr.ch/huridocda/huridoca.nsf/\(symbol\)/a.res.48.104.en](http://www.unhcr.ch/huridocda/huridoca.nsf/(symbol)/a.res.48.104.en)

관련 용어 : 착취

소년병 (Child Soldier)

다수의 국제협약은 아동이 무력분쟁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1977년 부속의정서와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s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에 따르면, 무력 분쟁에 모집되어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15세이다.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제3조에 의해 아동은 무력분쟁 지역에 “강제 혹은 의무적으로 모집”되어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는다. 나아가 2000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선택의정서는 무력분쟁 지역에 아동을 관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전문 참조 :

<http://www.icrc.org/eng/war-and-law/treaties-customary-law/geneva-conventions/index.jsp>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7/com-chic.htm>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7/com-chic.htm>

<http://www2.ohchr.org/english/law/crc-conflict.htm>

관련 용어 : 아동, 착취,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수단 (Means)

인신매매를 성립시키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전적으로 기만적인 수단, 부분적으로 기만적인 수단 그리고 강제적 수단(유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인신매매, 행위, 착취

수단, 강제적인 경우 (Means, Forcible)

강제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끌고 간다.

동의어 : 유괴

관련 용어 : 유괴, 납치

수단, 부분적으로 기만적인 경우

(Means, Partially Deceptive)

인신매매 피해자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될지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수단, 전적으로 기만적인 경우

(Means, Fully Deceptive)

인신매매 피해자는 고용과 재정적 이득에 대한 약속에 현혹되고, 인신매매자의 본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완전히 속게 된다.

식별 (Identification)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 나타난 정의에 따라 한 개인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참조 :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신분증명서류, 신분증 (Identity Document)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관련 용어 : 여권, 출입국 서류

아동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 한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1조) 국제법상 아동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특별한 대상으로서,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전문 참조 : <http://www.unicef.org/crc/>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아동노동 (Child Labor)

“아동노동은 아동의 교육적·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유해한 노동이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32조) 국가는 취업 연령을 제한하고 근로 시간 및 조건을 규제해야 한다. 아동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에 저해되거나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장애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32조) 국가는 취업 연령을 제한하고 근로 시간 및 조건을 규제할 의무가 있다.

전문 참조 : <http://www.unicef.org/crc/>

관련 용어 : 아동, 착취,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역량강화 (Empowerment)

법적 권한이나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자기실현을 돕고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것¹³

연계체계 (Referral System)

모든 지원 단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원조, 지원, 보호를 조정하는 시스템

외상 (Trauma)

외부 행위자에 의해 가해진 신체적 손상, 심각한 정신적·감정적 스트레스 또는 신체적 상처로부터 비롯된 마음이나 행동의 혼란 상태, 감정적인 동요¹⁴

유괴 (Abduction)

무력이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피어내는 행위¹⁵

관련 용어 : 납치, 수단(강제적인 경우)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충하는 의정서이다. 이주자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만 범죄자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이주자 밀입국 중개를 주도하는 조직범죄 집단의 문제를 다룬다.

전문 참조 :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관련 용어 : 이주자 밀입국 중개,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이주 (Migration)

국경을 넘거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동을 지칭한다. 이동 기간이나 내용,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인구 이동을 포함한다. 그 예로는 난민, 유민, 실향민, 경제적 이주민의 이주가 있다.¹⁶

관련 용어 : 비정규 이주, 정규 이주

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

“출신국이 아닌 국가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 온 사람”을 지칭한다.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igrant Workers’ Convention, MWC)」 제2조)

전문 참조 : <http://www2.ohchr.org/english/law/cmwt.htm>

관련 용어 : 이주

이주자 밀입국 중개 (Smuggling of Migrants)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기타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해당 국가에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불법 입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제3조)

전문 참조 :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smug_eng.pdf

관련 용어 : 비정규 이주,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

인권 (Human Rights)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수용되는 가치에 의거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이익을 가리킨다.¹⁷ 이러한 권리는 1948년 「세계인권

선언),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으로 구성되는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 담겨있으며, 이를 기초로 다른 조약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전문 참조 :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행위, 유괴, 기만, 사기, 권력의 남용, 상대방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제3조) 인신매매는 상호연결 되어있는 행위, 수단, 목적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전문 참조 :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관련 용어 :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충하는 의정서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이용당하면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다룬다. 이주자는 종종 감금되거나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성매매나 그 밖의 위험한 일을 강요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적인 수입은 조직범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전문 참조 :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동의어 : 팔레르모 의정서

관련 용어 : 인신매매,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인신매매 피해자 (Victims of Trafficking)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인 사람(남성, 여성, 아동)

동의어 : 인신매매된 자

관련 용어 : 아동, 인신매매

인신매매자 (Trafficker (of Humans))

경제적 또는 기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기, 강압 및 다른 종류의 착취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운반하는 자를 지칭한다. 인신매매자의 의도는 사람을 착취하여 이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관련 용어 : 인신매매

재통합 (Reintegration)

특정한 개인을 어떤 집단이나 과정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주자가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사회에 다시 편입되는 과정¹⁸

재통합 (경제적) (Reintegration (economic))

이주자의 출신 국가나 출신 사회의 경제체제로의 재편입을 지칭하며, 이주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¹⁹

재통합 (문화적) (Reintegration (cultural))

귀환 이주자의 입장에서 출신 국가나 출신 사회의 가치, 생활방식, 언어, 도덕규범, 사상, 전통에 대한 재적응²⁰

재통합 (사회적) (Reintegration (social))

이주자가 출신 국가나 출신 사회의 사회구조로 재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인적 관계망 형성(친구, 친척, 이웃)을 포함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발전(연합단체, 자조집단, 기

타 여러 단체)을 의미하기도 한다.²¹

정규 이주 (Regular Migration)

법적으로 인정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이주

동의어 : 합법적 이주, 준법 이주(Orderly Migration)

반의어 : 비정규 이주

관련 용어 : 이주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중앙 조직을 통해 계획되고 통제되는 광범위한 범죄 활동²²

관련 용어 : 이주자 밀입국 중개, 인신매매

지표 (Indicator)

지표는 성과, 변화, 또는 실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양적 또는 질적 기준이다. 시행, 서비스, 절차의 특성과 이행 정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지표는 실행을 측정, 감시, 평가, 개선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성 인지 지표, 성과 지표

직접지원 (Direct Assistance)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범주의 활동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안녕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직접지원의 목표는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착취 (Exploitation)

사물이나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²³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로서,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적출 등이 포함된다.” (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제3조) 인신매매자는 오로지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착취해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무급 노동 혹은 무료 서비스를 얻고자 한다.

전문 참조 :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관련 용어 : 강제노동, 가사노예, 성적 착취, 수단, 행위

채무노예 (Indebted Servitude)

노예상태(Servitude)란 종속적이고, 경제적으로 착취적인 노동 관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²⁴ 이러한 노예상태는 때때로 인신매매 피해를 통제하기 위해 채무관계를 이용하는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관련 용어 : 착취,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가사노예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Debt Bondage)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담보로 하거나,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기로 약속할 때 발생하는 지위 또는 상황을 지칭한다. 서비스를 통해 채무를 청산할 때에는 서비스의 합리적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일의 성격이 모호하다.” (1956년 「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제1조)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문 참조 :

<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trade.htm>

관련 용어 : 통제, 강압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돈세탁, 부정부패, 조사나 기소의 방해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연루된 활동 전반과 주요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룬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세부 영역으로서 특정한 고려사항(인신매매, 이주자 밀입국)을 두 개의 보충 의정서에서 다루고 있다.

전문 참조 :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관련 용어 :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출신국 (Country of Origin)

이주자의 출신 국가, 이주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국가(합법/불법적 이주에 상관없이 해당)

동의어 : 송출국(Source Country)

관련 용어 : 목적국, 경유국

출입국 서류 (Travel Documents)

타국 입국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여권, 비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출입국 서류이다. 특정한 신분증이나 다른 서류를 받는 나라도 있다.

관련 용어 : 신분증명서류

통제 (Control)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로서 제한을 가하거나 지시를 내리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²⁵ 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예, 신분증 혹은 출입국 서류 압수), 공포심 유발 및 심리적·신체적 폭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관련 용어 : 강압,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

피해자 (Victim)

어떠한 행위자나 폭력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을 지칭한다. 피해자는 사고나 범죄 등을 겪으면서 상해를 입고, 파괴되고, 희생된다. 또한 억압과 고통과 학대의 대상이 되며, 기만당한다.²⁶

행위, 동원 (Mobilization)

인신매매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동은 국제적(둘 이상의 국가)으로, 또는 한 국가 내에서(즉, 국내 인신매매) 발생할 수 있다.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해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용어 : 수단, 착취, 인신매매

SMART 분석 (SMART Analysis)

잠재적 지표를 분석하는 기준을 지칭한다. 지표가 구체적인지/작은 단위인지, 측정 가능한지, 달성 가능한지/성취 가능한지, 현실적인지/관련 있는지, 추적 가능한지/시기적절한지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 /

¹ Human Rights Watch, *Hidden in the Home: Abuse of Domestic Workers with Special Visas in the United States*, 2001. online at: <http://www.hrw.org/reports/2001/usadom/index.htm#TopOfPage>, accessed October 2004

² Black's law dictionary

³ Adapted from IOM, *International Migration Law: Glossary on Migration*, op. cit., p.56

⁴ Merriam-Webster Online

⁵ Feinrider, M., Kidnapping,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o.8, Human Rights and The Individual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North Holland,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1985, p.355

⁶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International Migration Law: Glossary on Migration*, Geneva, 2004, p.42

⁷ Merriam-Webster Online

⁸ *The Practical Guide to Humanitarian Law* Françoise Bouchet-Saulni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⁹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84th Session of the Council*, available online at: <http://www.iom.int/iomwebsite/Publication/ServletSearchPublication?event=detail&id=2811>

¹⁰ Ghosh, B. "Huddled Masses and Uncertain Shores, Insight into Irregular Mi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artinus Nijhoff 1998, p.1

¹¹ Perruchoud, R., "Migration Termin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and Law Courses, Budapest, Hungary, 1998

¹²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http://www.britannica.com>, accessed June 2006

¹³ Merriam-Webster Online, accessed September 2006

¹⁴ 위와 동일

¹⁵ Garner, B. (ed.), *Black's law dictionary (7th Edition)*, West Group, St. Paul, 1999, (see further as Black's law dictionary)

¹⁶ Merriam-Webster Online

¹⁷ Migration Terminology: Concepts and Definitions, Working Draft, IOM

¹⁸ Adapted from IOM, *International Migration Law: Glossary on Migration*, op. cit., p.54

¹⁹ 위와 동일

²⁰ 위와 동일

²¹ 위와 동일

²² Black's law dictionary

²³ Black's law dictionary

²⁴ Human Rights Watch, *Hidden in the Home: Abuse of Domestic Workers with Special Visas in the United States*, 2001 online at: <http://www.hrw.org/reports/2001/usadom/index.htm#TopOfPage>, accessed October 2004

²⁵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www.m-w.com, accessed October 2004 (see further as Merriam-Webster Online)

²⁶ Merriam-Webster Online, accessed September 2006



NOTES: _____

참고문헌과 출처

REFERENCE MATERIALS AND RESOURCES

서적, 논문, 보고서

국제이주기구(www.iom.int)

인신매매 방지 활동 보고서와 인신매매 연구

- Second Annual Report on Victims of Trafficking in South-Eastern Europe, 2005
남동부 유럽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제2차 연간 보고서, 2005
- Legal Review on Trafficking in Persons in the Caribbean: The Bahamas, Barbados, Guyana, Jamaica, the Netherlands Antilles, St. Lucia, and Suriname, 2005
카리브해 지역의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검토: 바하마,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자메이카, 네덜란드 엔틸레스, 성 루시아, 그리고 수리남, 2005
- Exploratory Assessment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the Caribbean Region: The Bahamas, Barbados, Guyana, Jamaica, the Netherlands Antilles, St. Lucia, and Suriname, 2005
카리브해 지역의 인신매매에 대한 탐색적 평가: 바하마,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자메이카, 네덜란드 엔틸레스, 성 루시아, 그리고 수리남, 2005
- Data and Research on Human Trafficking: A Global Survey, 2005
인신매매에 관한 자료 및 연구: 글로벌 조사, 2005
- Fertile Fields: Trafficking in Persons in Central Asia, 2005
비옥한 대지: 중앙아시아의 인신매매, 2005
- The Mental Health Aspect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4
인신매매에 대한 정신건강의 측면, 2004
- Psychosocial Support to Groups of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Transit Situations, 2004
경유국에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2004
- Changing Patterns and Trend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the Balkan Region-Assessment carried out in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the Province of Kosovo,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and the Republic of Moldova, 2004
발칸국가에서 인신매매의 변화 유형과 동향 -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코소보, 옛 유고슬라비아의 마케도니아공화국, 몰도바공화국에서 수행된 평가, 2004
- Revisiting the Human Trafficking Paradigm: The Bangladesh Experience, 2004
인신매매 패러다임의 재검토: 방글라데시 사례, 2004
- Trafficking in Unaccompanied Minors in Ireland, 2004
아일랜드 내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의 인신매매, 2004
- Who Is the Next Victim? Vulnerability of Young Romanian Women to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3
다음 희생자는 누구인가? 인신매매되는 젊은 루마니아 여성들의 취약성, 2003

- Counter-Trafficking in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2003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인신매매 방지, 2003
- First Annual Report on Victims of Trafficking in South Eastern Europe, 2003
남동부 유럽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제1차 연간 보고서, 2003
- Irregular Migration and Trafficking in Women: The Case of Turkey, 2003
비정규 이주와 여성 인신매매: 터키의 사례, 2003
- Migración, Prostitución y trata de mujeres dominicanas en la Argentina, 2003
아르헨티나 내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들의 이주, 성매매 및 인신매매, 2003
- Protection Schemes for Victims of Trafficking in Selected EU Member Countries, Candidate and Third Countries, 2003
유럽연합 회원국과 후보국, 제3세계 국가에서 선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계획, 2003
- Trafficking in Persons – An Analysis of Afghanistan, 2003
인신매매 – 아프가니스탄 사례 분석, 2003
-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Sexual Exploitation in Southern Africa, 2003
성적 착취를 위한 남아프리카 지역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2003
- Return and Reintegration — Counter-Trafficking — Situation Report in Kosovo, 2002
귀환과 재통합 – 코소보 인신매매 방지 상황 보고서, 2002
- Trafficking in Unaccompanied Minors in the European Union, 2002
유럽연합의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의 인신매매, 2002
- Second Research Report on Third Country National Trafficking Victims in Albania, 2001
알바니아 내 제3국민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2차 조사 보고서, 2001
- Shattered Dreams: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in Azerbaijan, 2002
깨어진 꿈: 아제르바이잔 인신매매 보고서, 2002
- Deceived Migrants from Tajikistan: A Study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2001
타지키스탄에서 기만당한 이주자들: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 2001
-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rom the Republic of Armenia: A Study, 2001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 2001
- Victims of Trafficking in the Balkans: A Study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Sexual Exploitation to, through and from the Balkan Region, 2001
발칸 국가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2001
- Migrant Trafficking in Poland: Actors, Mechanism, Combating, 1999
폴란드의 이주자 인신매매, 1999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평가

- Information Campaign to Combat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in Cambodia, Final Evaluation, by Candice Sainsbury, August 2006
캄보디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정보 캠페인, 최종 평가, 2006
- Economic Rehabilitation of Survivors of Trafficking in India, IOM/Gol, by Lacey Ilene Ruben, July 2006
인도에 있는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경제적 재활, 2006
- Mass and Micro-Information Campaign Awareness Impact Assessment – Information Campaign to Combat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in Cambodia Project, Joint evaluation MOWA/IOM, March 2006

- 거시 및 미시적 정보 캠페인의 영향 평가 – 캄보디아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방지 정보 캠페인 프로젝트, MOWA/IOM의 공동 평가, 2006
- Evaluation of the IOM Assisted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of Ghanaian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for Labour Exploitation in Yeji Fishing Communities, Republic of Ghana, IOM, by Sciences Po-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June 2005
예지 어촌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가나 인신매매 피해아동의 IOM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에 대한 평가, 2005
- Trata Internacional de Mujeres para la Industria del Sexo en el Perú (also available in English), Evaluación Externa Proyecto, OIM, por A. Ludeña, Mayo 2005
페루 내 성매매 여성들의 인신매매(영어 자료 열람 가능), 2005
-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ology for Mass Information Activities
대중 정보활동에 대한 연구와 평가 방법론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of the IOM Project for the Return and Reintegration of Trafficked and Other Vulnerable Women and Children between Selected Countries in the Mekong Region, 2003
메콩지역 선별국 간 인신매매 피해자와 다른 취약 여성, 아동의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IOM 프로젝트에 대한 감찰국의 일반 평가, 2003
- Evaluation IOM Regional Counter-trafficking Programme in the Western Balkans, SIDA 2003
발칸서부지역의 IOM 지역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평가, SIDA 2003
- Evaluation of the Counter-trafficking Programme in Moldova, SDC/IOM 2003
몰도바의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평가, SDC/IOM 2003
- Evaluation of the Technical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Kyrgyzsta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of Action – Combating Trafficking and Smuggling in Human Beings, A. Rysaliev, 2003
행동 계획 실행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기술적 원조에 대한 평가 – 인신매매와 밀입국 퇴치, A. Rysaliev 2003
- IOM MIC Evaluation of Project for Awareness Raising and Information Strategy on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2002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향상과 정보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IOM MIC의 평가, 2002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of the IOM Information Programme in the Philippines, 1999
필리핀 IOM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관의 일반 평가, 1999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of IOM Public Information Programmes, 1999
IOM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감찰국의 일반 평가, 1999

미주기구 소속 미주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http://www.oas.org/cim/>)

- In Modern Bondage: Sex Trafficking in the Americas: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근대적 구속: 미주의 성 인신매매: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 연안 국가

런던 위생 및 열대의과대학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LSHTM)

- The Health Risks and Consequences of Trafficking in Women and Adolescents,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2003 (<http://www.lshtm.ac.uk/hpu/docs/traffickingfinal.pdf>)
인신매매가 여성과 청소년에 미치는 건강 위험과 결과, 런던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 국제 비준서 전문 출처

인신매매 방지와 근절에 관한 브뤼셀 선언

Brussels Declara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2)

<http://www.belgium.iom.int/STOPConference/Conference%20Papers/brudeclaration.pdf>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행동 계획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Plan of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2002–2003)

http://www.unodc.org/pdf/crime/trafficking/Minimum_Plano_CEDEAO.pdf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http://www2.ohchr.org/english/law/cerd.htm>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http://www2.ohchr.org/english/law/ccpr.htm>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http://www2.ohchr.org/english/law/cescr.htm>

국제노동기구,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18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1999)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182>

유럽안보협력기구,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행동 계획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ction Plan to Comba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3)

<http://www.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1511/file/77605b15b0b3c52817e1d85bb906.pdf>

동남아시아협력연합,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협약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Prostitution

<http://www.saarc-sec.org/userfiles/conv-trafficking.pdf>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http://www.unicef.org/crc/>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http://www2.ohchr.org/english/law/cmw.htm>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2002)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Traffickinge.pdf>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2000)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smug_eng.pdf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웹사이트

Council of Europe, <http://www.coe.int/>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http://www.causes.com/causes/1413-end-child-prostitution-child-pornography-and-trafficking-of-children-for-sexual-purposes>

European Union Summaries of Legislation,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index_en.htm

Freedom Network, <http://www.freedomnetworkusa.org/>

Fundación ESPERANZA, <http://www.fundacionesperanza.org.co/>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http://www.gaatw.org/>

Human Trafficking.org, <http://www.humantrafficking.org>

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 <http://www.icmc.net>

International Center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http://www.icmpd.o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www.ilo.or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ttp://www.iom.int>

La Strada – Prevention of Traffic in Women, <http://www.strada.cz>

Legislation Online, <http://www.legislationline.org>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http://www.osce.org>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within OSCE), <http://www.osce.org/odi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ink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http://www.ohchr.org/EN/Pages/WelcomePage.aspx>

The Protection Project, <http://www.protectionproject.org>

Save the Children, <http://www.savethechildren.net/alliance/index.html>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http://www.unicef.org>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http://www.unwomen.org>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ttp://www.unodc.org/unodc/index.html>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http://www.state.gov/g/tip/>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http://www.state.gov/g/tip/rls/tiprpt/2004/>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

